

# 2026년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(2차)

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와 인천 청년이 함께 혁신·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「2026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3일  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## I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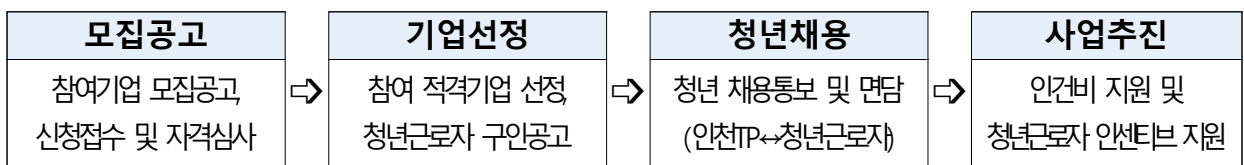
□ 사업명 : 2026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

□ 사업목적

- 청년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및 지역 기업과 인천 청년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
-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사업내용

- 접수기간 : 2026. 4. 17.(금) 9:00 ~ 4. 30.(목) 17:00  
※마감 이후 접수 불가
- 지원기간 :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 개시일로부터 1년(12개월)
- 지원내용 :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(월 60만원)
- 모집인원 : 약 30~40개사(기업당 최대 청년 2명\* 신청 가능)  
\* 신청 인원이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, 선정 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 추진절차



## II

## 지원내용

### □ 인건비 지원 :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지원

구분	부담주체	부담률	부담내용
인건비 지원	시비 보조	28%	월 600,000원
	기업부담	72% 이상	월 1,556,880원 이상
		추가부담	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기업부담금
청년 부담	개인부담	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개인부담금	

※ 2026년 최저시급(10,320원) 기준, 월 기본급 2,156,880원 이상 지급

- 지원기간 : 청년근로자 인건비는 근로개시일 기준 1년 (최대 12개월)
  - 사업 예산 범위 내 가능하고,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조정될 수 있음
  -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하는 경우 채용일부터 지원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제한할 수 있음
  - 인건비 지원 기간 중 청년근로자 중도퇴사 시 1회에 한하여 대체채용 가능
  - 대체채용된 청년의 인건비 지원은 전 근무자의 퇴사일 이후 잔여 지원금까지만 가능하며, 청년의 중도포기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채용 지원하지 않음 (※대체채용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며,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)

### □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(최대 120만원)

- 참여기업에서 6개월/12개월 근속 시점 지역화폐(e음포인트) 지급
-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

- ①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, 12개월 근무
- ② 참여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광역시로 유지되어야 함

- ‘6개월/ 12개월 근무’ 는 청년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의 ‘재직 기간’ 을 의미하며, 근로계약서,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
  - 휴직, 휴업,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판단
-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우리 사업과 유사한 현금성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

### III

## 지원요건

### □ 참여기업 :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\* 인천 소재 중소·중견기업

\*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 수(대표자 제외)

-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기업을 원칙으로 하나, 다음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

- 1)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미래성장 핵심산업\*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  
\* 미래성장핵심산업 : 항공산업, 바이오산업, 뷰티산업, 지능형로봇산업, 신소재중심뿌리 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 및 기타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등 (붙임4 참고)
- 2) 인천광역시 인증 우수기업(비전기업, 유망중소기업 등)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
- 3)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

※ 참여기간 중 사업장의 이전/휴업/폐업, 업종/업태/종목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일로 사업 참여를 종료함

※ 1차 모집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2차 모집 접수 불가능

### - 제외기업

-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수요기업

- 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
- 커피점·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接客·판매
- 건설·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
- 다단계 판매 또는 외근영업
-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[예] 의사 등 전문직종
-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로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일자리

-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의 기업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(기업)
-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
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(1년 이내 이직한 경우에 한정)

-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기업
-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(사업자)
-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
  - ※ 사업주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
  - ※ 사업장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사전정보공표목록 > 산재예방/산재보상 >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## □ 청년근로자 : 인천광역시 거주(주민등록) 만 39세 이하 청년

- 연령기준 : 1986. 1. 2. 이후 출생자(2026. 1. 1. 기준)
- 청년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
- 타 지역 거주자를 참여자로 선정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시 참여 가능
  - ※ 「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33조(군 복무기간별 연령 환산기준) 및 제 21조의4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에 의거 청년 연령 연장 인정 기준 적용(운영지침 참고)

### - 제외청년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인 자
- 병역 특례자, 병역특례 근무 사실이 있는 자(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불가)
- 기업의 사업주(기업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등 친·인척 관계(특수관계)에 있는 자
- 재택근무자
  - ※ 재택근무자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(사전 운영기관 협의 必)
-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또는 반복참여자
  - ※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」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
  - ※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(해당 년도에 참여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로 간주)
-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지원 받는 자
  - ※ 지원기간 중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또는 반복으로 지원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, 기 지급된 지원금 반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
  - ※ ‘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(청년)’ 등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他채용사업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

## IV

##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

### □ 추진일정

모집공고 및 접수 2026. 4. 17.(금) ~ 4. 30.(목) 17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참여기업 모집공고</li> <li>•온라인 참여 신청(BizOK)</li> </ul>
↓	
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2026. 5. 4.(월) ~ 5. 11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확인</li> <li>•심사위원 선정평가(고득점 순)</li> </ul>
↓	
선정통보 2026. 5. 12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선정기업 담당자 이메일 및 문자 개별 통보</li> </ul>
↓	
약정체결 2026. 5. 14.(목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기관 방문 약정체결</li> <li>•청년근로자 채용안내</li> </ul>

### □ 신청방법

- 신청방법 : 비즈오케이(BizOK) 온라인 접수
  - <https://bizok.incheon.go.kr> \* 홈페이지 내 ‘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’ 에서 신청

### □ 신청서류

- 온라인 작성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참여신청서	온라인 작성
	고용계획서	온라인 작성
	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	온라인 작성

- 첨부서류(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)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사업자등록증 사본	
	직전 3개년 재무제표(2023년~2025년)	
	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(검색기준: '25.1.1.~ 신청일)	'상실일' 표시 및 검색일 준수 필수
	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	
	사업주(기업대표)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	공동대표 전부 제출
	직인 스캔파일	
선택	가점 해당서류	붙임3 참고
	업종코드 캡처(10인~20인미만 기업해당)	붙임4 참고

V

심사기준

구분	심사기준		배점	심사항목
정량	재무구조 안정성	매출증가율	10점	- 최근 3개년 결산 기준 매출액을 활용하여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10%이상(10), 7~9%(8), 3~6%(6), 1~2%(4), 0%이하(2)
		부채비율	10점	- 부채비율(=부채총계/자본총계)×100 100%이하(10), 101~150(8), 151~200%(6), 201~250%(4), 251~300%(2), 301%이상(0)
	고용 안정성	근로자 증가율	10점	- 참여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근로자 증가율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) - (24.12월 말 근로자수 - '현재 근로자수(전체)/24.12월 말 근로자수×100 - 25%이상(10), 24~20%(8), 19~15%(6), 14~10%(4), 9~5%(2)
		정규직 비율	5점	- 참여신청일 기준 정규직 비율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) - 현재 정규직 수 / 현재 근로자 수(전체)×100 - 90%이상(5), 89~80%(4), 79~70%(3), 69~60%(2) 59%이하(1)
		퇴사자 비율	5점	- 참여신청일 기준 최근 1년 퇴사자 비율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) - '25년 퇴사자 수 / 현재 근로자 수(전체)×100 - 5%미만(5), 10%미만(4), 11~20%(3), 21~30%(2), 31%이상(1)
	정성	(청년) 신규채용 필요성	20점	- 신규채용에 대한 배경 및 현재(향후) 사업장에 신규인력이 필요한 내용 평가(0~20)
(기업) 참여기업 성장성		10점	- 참여기업의 사업아이템 및 사업 분야에 대한 향후 성장성 및 비전 등 시장경쟁력 및 기술력 평가(0~10)	
(청년) 인력 활용의 적정성		10점	- 청년근로자의 업무수행계획 구체성 및 요구되는 전문성의 적합여부 등 인력관리방안 평가(0~10)	
(기업) 일자리 지속성		20점	- 청년 적합형 일자리, 근로환경, 노사관계, 복지 수준, 일생활균형, 직원 자기개발 장려 등 고용유지 노력 평가(0~20)	
가점	기술경영사항	5점	- 산업재산권(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) 보유 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, INNO-BIZ(기술혁신형) 인증기업 - 유망중소기업, 비전기업, 중견성장사다리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수출 유망기업 등(5)	
	시책	5점	- 여성CEO/장애인 기업,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, 가족 친화 인증기업, 청년 친화 강소기업,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, 뿌리기업 등(5)	
합 계				110점(가점 10점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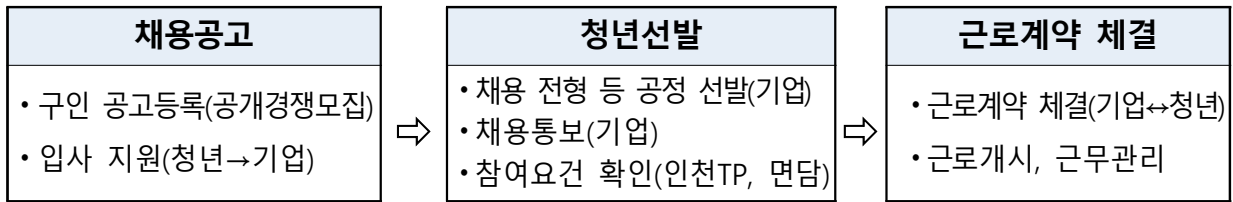
※ 신규창업기업('24~'25년) 관련 증빙자료(재무제표) 또는 수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점수를 적용

- 매출증가율 8점, 부채비율 10점, 근로자증가율 6점, 정규직 비율 3점, 퇴사자 비율 3점
- 재무제표 평가는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분에 기준함

## VI

## 청년근로자 채용 절차

### □ 청년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절차



- 청년근로자 채용통보 : 참여기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

※ 반드시 선정통보일(5/12) 이후 신규 채용자만 지원가능

※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약정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나,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(1개월) 또는 축소할 수 있음

※ 근로개시 이후에 청년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, 해당 근로자 사업참여 취소

### □ 채용통보서류

- 온라인 작성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청년근로자 채용통보서	온라인 작성

- 첨부서류(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)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청년근로자 참여신청서	서식5
	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(청년)	서식6
	부정수급방지확약서(청년)	서식7
	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(청년)	
	근로계약서 사본(자체양식 활용 가능)	서식8
	청년근로자 선발 면접 점수표(자체양식 활용 가능)	서식9
	채용공고문 전문	
	청년근로자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	
	졸업(예정)증명서	
선택	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	

### □ 근로조건(사업참여 기준과 다를 시 지원 불가)
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필수(계약직 채용 불가)

- 세전 기본급 기준 월 2,156,880원 이상 임금 지급조건 필수

- 4대 보험 가입 필수
- 청년 근무는 1일 8시간(주 40시간), 주 5일(월~금)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과 청년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(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해당)
-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및 기타 임금 조건, 근무 기간, 근무 장소, 업무 내용, 여성보호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
- 휴식시간,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고,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기업 취업규칙,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운영지침 준수

## VII 문의처 및 기타

### □ 문의처

담당	이메일	문의전화
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 인천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담당	youthjob3046@gmail.com	<b>032-725-3046</b> ※ 평일 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
#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「2026년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」 운영지침에 따름 (※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, 운영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)
-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
- 마감일, 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하며, 운영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한 접수로 인한 시스템 등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
- 기재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
- 추후 협약체결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사업 참여 기업은 매출,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/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,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.